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46
----------	-------

발의연월일 : 2026. 9. 29.

발 의 자 : 안호영 · 신정훈 · 이학영
이춘석 · 朴芝原 · 박희승
이성윤 · 윤준병 · 김주영
김의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두 수계의 지역적 특성, 유역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는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산강·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다른 두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하나의 법률로 제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를」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함으로써, 각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영산강수계 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 나.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조 및 제16조).

마. 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산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

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
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영산강 및 탐진강 수계(이하 “영산강수
계”라 한다)와 해당 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해당
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산강수계 지역의 구

체적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산강 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장흥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

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통합특별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

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철도·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8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

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영산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영산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산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 특별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 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2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2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통합특별시장(자치구의 관할구역에 한정한다)·시장·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통합특별시장·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도지사가 승인

④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통합특별시장·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또는 통합특별시장(자치구의 관할구역에 한정한다)·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

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나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6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는 제14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기후에너지

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7조(허가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은 제13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통합특별시·도 및 시·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과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9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 관리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통합특별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20조(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

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산강 및 탐진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22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4조(자료의 요청 및 처리) ①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군수는 주민지원 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8조에 따른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7조(수질개선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자치구의 관할구역에 한정한다)·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통합특별시장·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3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통합특별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6조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통합특별시장(자치구의 관할구역에 한정한다)·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6조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면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30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4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借入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 각 호(같은 조 제2호·제9호·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7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영산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전입금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4. 차입금
5.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6. 기금운용수익금

제3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1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제19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6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의 지원
 10.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40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영산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38조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35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영산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영산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통합특별시장에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영산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산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개선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
2. 시장·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인·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조류발생 등으로 인하여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자치구의 관할구역에 한정한다)·시장·군수는 제14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9장 벌칙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3조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자치구의 관할구역에 한정한다)·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변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

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중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같은 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산강수계에 관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목표수질은 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목표수질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의 행위나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의 행위나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이하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승계한다. 이 경우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

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명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를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7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72호 및 제7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3.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⑤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4대강수계법””을 ““수계법””으로, “4대강수계법의”

를 “수계법의”로 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4대강수계법”을 각각 “수계법”으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97호 및 제9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8.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토목 및 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포.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⑧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10조·제11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를 “제10조·제11조,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로 한다.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8.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⑩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제2호라목4)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6)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⑪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를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⑫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제4조,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162 근거 법률란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63 근거 법률란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64 근거 법률란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65 근거 법률란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하며, 같은 표에 연번 165의2, 165의3, 165의4, 165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5의2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	---------------------------------	------

165의3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165의4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165의5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타.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제15조의2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26의2.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⑮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를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가산금·과징금,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